

『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과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 ~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,
「지방재정법」 , 「지방회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회계과 및 징수과와 합의
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
운영 조례안」 은
 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
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
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및 발전소
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
다고 판단됨.